

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3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'예치금 회수' 수입금액 증가 (14,553백만원)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

○ 2023년 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당초(A)*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36,832	51,385	14,553
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	5,470	5,470	-
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	5,000	5,000	-
사회적금융기관 등 지원	370	370	-
채권관리비	100	100	-
재무활동	31,352	45,905	14,553 (46.4%)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	20,000	20,000	-
여유자금 예치	11,352	25,905	14,553
행정운영경비	10	10	-
기금관리비	10	10	-

*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('22. 12월)을 받은 금액임

○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	
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합계	36,832	51,385	14,553	합계	36,832	51,385	14,553	
기금				사업비	기금 용자금	5,000	5,000	-
용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11,863	11,863	-		이차보전금	370	37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247	247	-		채권관리비	100	100	-
예치금 회수	24,722	39,275	14,553	재무 활동	통계청장상환기금 예탁금	20,000	20,000	-
					예치금	11,352	25,905	14,553
					기본경비	10	10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<p>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</p> <p>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</p>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황신아 (☎2133-5490)